

가족먼저, 행복먼저

(무)현대해상하이퍼스트상해보험 (Hi2601)

가입안내

구 분	VIP플랜 (금리고정형)	VIP플랜 (금리변동형)
가입연령	만 15세 ~ 80세	
보험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기간	2년, 3년, 전기납	2년, 3년, 5년, 10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연납	
적용이율	2.5% 고정금리	보장부분 : 2.5% / 적립부분 : 보장성공시이율 V (매월변동)
최저 보증이율	해당없음	연복리 0.3%
최저 보험료	월납 3만원, 연납 36만원	
중도인출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해 매 보험년도마다 최대 4회	
납입면제	상해후유장애 50%이상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적립보험료 납입중지)	

연령별 환급률표

[가입기준 : 상해1급, 만기일부환급형(상해사망1백만 /상해사망후유장애1백만,월납3만원) (단위:%)]

구 분	VIP플랜(금리고정형) 5년납5년만기		VIP플랜(금리변동형) 10년납10년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99.83	99.91	98.41	98.49
40세	99.82	99.89	98.39	98.47
50세	99.76	99.85	98.33	98.42
60세	99.68	99.79	98.25	98.37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제결

보험계약제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중대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약철의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권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시하는 상품),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에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료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상의 일일 의무 불이행 사항

- 계약 전 일일 의무: 계약 청약 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자책이름자 등자 또는 원동기(장기)자전거(전동보통차, 전동이동장치), 전동기(전동보통차, 전동보통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 등 개관한 이동차(자전거)의 사실(다만, 전동보통차, 이륜자동차 등 보행보통차의 운전자는 제외)을 등사하여 알려야 하며,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일일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동차(장기) 또는 원동기(장기) 자전거(전동보통차, 전동보통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 등 개관한 이동차(자전거)를 운전할 때, 장래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통차의 운전(전동보통차, 이륜자동차 등)은 제외합니다.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계속(군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가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를 관개할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일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실을 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및 변동 가능성

해환금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환금금

보험은 운영의 지속과에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를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환금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일신, 출산(태양청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인의 무력행사, 역병,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지보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보호법에 따라 해환금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하 "대환금"이라 함)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수용의 사고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하 "대환금"이라 함)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적인 보할 제반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지보보험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지보보험(www.xdjc.or.kr)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전자민원 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 콜센터 ▶ 02-3702-8500 / 인터넷상담 https://consumer.krnia.or.kr/consumer/center/counsel.do • 금융감독원 : 콜센터 ▶ 국민없이 1332 / 민원신청 https://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콜센터 ▶ 국민없이 1372

• 제작자 : 방카영입부 • 제작일 : 2025.12.23 • 확인일 : 준법감시인
• 승인일자 : 2025.12.23 • 승인번호 : 20255606 • 유효기간 : 2025.12.23 ~ 2026.12.23
• 판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하나은행(2003091001)

보험상담/사고접수
1588-5658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보험에서는 본인인증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환금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 청구권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알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금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금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1. 청약사실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전달
3. 관련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보관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 및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본법에 의한 사이버보험)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관련 유의사항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편매를 할 수 없고,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처만이 보험편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편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민 없이 1332, 유선전화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 (www.krnia.or.kr) 내 "모집질서위반신고센터",

보험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insucop.fss.or.kr)
• 현대해상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02)734-5653 / 팩스 ▶ (02)722-5330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센터 :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이 지어집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판매사
하나은행

보험사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하이퍼스트상해보험
(Hi2601)



평범한 일상이,
언제나 안전하도록

현대해상하이퍼스트상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www.hi.co.kr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00*210 / 150*250 mm

보장내용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상해사망1백만/상해사망후유장애1백만, VIP플랜(금리고정형) 5년납5년만기, VIP플랜(금리변동형) 10년납10년만기, 만기일부환급형](단위:원)

구 분	가입금액(최저~최고)		가입설계예시(보장보험료)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VIP플랜 (금리고정형)	VIP플랜 (금리변동형)	VIP플랜 (금리고정형)	VIP플랜 (금리변동형)		
상해사망	1백만 (1백만 ~ 6억)	1백만 (1백만 ~ 6억)	16	17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애	1백만 (1백만 ~ 1억)	1백만 (1백만 ~ 1억)	38	39	* 상해로 사망시 * 상해로 장애지급율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 사망시 : 가입금액 * 후유장애발생시 : 가입금액 X 후유장애지급률
보장보험료 소계			54	56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적립보험료			29,946	29,944		
월납보험료(보장+적립)			30,000	30,000		



해약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상해사망1백만/상해사망후유장애1백만, 월납 30,000원(보장 54원, 적립 29,946원)](단위:원)

VIP플랜 (금리고정형) 5년납5년만기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2.5%)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60,000	287,290	79.80%	287,290	79.80%
	2년	720,000	640,860	89.01%	640,860	89.01%
	3년	1,080,000	1,003,020	92.87%	1,003,020	92.87%
	4년	1,440,000	1,373,900	95.41%	1,373,900	95.41%
	5년	1,800,000	1,796,760	99.82%	1,796,760	99.82%

※ 상기 해약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연복리 2.5%(확정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예상금액이며 최저보증이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만기시점의 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만기까지 정상 유지된 계약 중 일부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중도 해지시 만기유지환급금 미지급)
 ※ 만기유지환급금이란 총납입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적립부분 적용이율 부리 만기환급금과 공시이율 부리 만기환급금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원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중도인출, 계약변경,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립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사전 기준이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자소독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상해사망1백만/상해사망후유장애1백만, 월납 30,000원(보장 56원, 적립 29,944원)](단위:원)

VIP플랜 (금리변동형) 10년납10년만기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0.3%)		평균공시이율(1.7%)		공시이율(1.7%)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60,000	227,520	63.20%	229,990	63.89%	229,990	63.89%
	3년	1,080,000	914,170	84.65%	935,480	86.62%	935,480	86.62%
	5년	1,800,000	1,604,710	89.15%	1,664,000	92.44%	1,664,000	92.44%
	7년	2,520,000	2,299,190	91.24%	2,416,360	95.89%	2,416,360	95.89%
	10년	3,600,000	3,299,250	91.65%	3,542,270	98.40%	3,542,270	98.40%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적립부리아이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 자동갱신(자동갱신 담보가 있는 경우) 및 향후 적립부리아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립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의 또는 만기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 V(2025년 12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 12월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만기시점의 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만기까지 정상 유지된 계약 중 일부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중도 해지시 만기유지환급금 미지급)
 ※ 만기유지환급금이란 총납입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예정이율 부리 만기환급금과 공시이율 부리 만기환급금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원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제 해지시에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보장성공시이율 V(2025년 12월 현재, 1.7%)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보장성공시이율 V의 변동(매월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